

Ⅲ-2 이사와 귀국

1. 이전 거주지에서의 수속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 가스, 전기요금의 정산을 합니다. 이사 전에 전화로 각각의 영업소에 이사할 것을 전하고 그들이 정산수속을 합니다. 또 우체국에 이전신고를 하면 1년간은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이 무료로 전송됩니다.

또 이전지가 현재 거주하는 시정촌인 경우에는 「전거신고서」를 내고,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신고」를 한 후, 「전출증명서」교부를 받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계에 「자격상실신고서」를 내고 보험증을 반납합니다.

2.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마치면

가스, 전기회사에 연락합니다. 가스는 가스회사에서 개통을 위해 담당자가 파견되니 개통 시에 집에 계셔야 합니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브레이커를 올리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사용을 시작하면 전기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수도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새 주소지의 시구청 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새로운 주소지에서 가입해 주십시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주소변경을 해 주십시오.

3. 귀국을 할 경우

- ① 임대주택에 관한 정산을 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 및 국내, 국제전화요금의 정산을 완료해 주십시오.
- ② 연도중에 귀국하는 경우는 세금의 정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세에 관해서는 시구청사무소에서 그 년도분을 전액 지불하여 주십시오. 지방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해 1년간 일본에 거주를 안해도 전액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소득세에 관해서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소에 신청함으로써 확정신고의 시기에 소득세의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그 해 소득세의 미납분을 일본을 떠나기 전에 전액 정산합니다.
- ④ 시구청사무소에서 해외전출신고를 해야합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은 귀국 한달 전 정도에 시구청사무소에서 보험료의 청산과 탈퇴수속을 해 주십시오.
- ⑥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탈퇴일시금을 귀국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사무소 혹은 근무처에서 신청용지를 받아 놓아 주십시오.
- ⑦ 재류카드를 출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해주십시오.